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5월 31일

나. 발 의 자: 차인영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4.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차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구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보호기간의 연장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제6조)
-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안 제7조 ~ 제8조)

- 자립지원센터 등 및 협의회(안 제9조 ~ 제10조)
-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구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은 조문에서 용어를 정비함에 따라 제명이 조례 내용을 대표할 수 있게 개정하였고,
- 안 제2조(정의)에서는 보건복지부·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하면서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참고하여 각 대상의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 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목표 및 방향, 시책개발,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지원사업)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8조(실태조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검토 결과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이하 “자립준비청년”이라 한다)은 일반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청소년과 비교하여 가족의 지원이 부족하여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1년3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이 2020년 7명, 2021년 2명, 2022년 7명, 2023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립지원사업으로는 생활안정·심리정서·일자리 지원 등이 있으나, 우리 구 자체사업은 없이 국·시비 사업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도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조문 신설, 자립준비청년 등의 상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0
----------	-----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차인영·이성수·전승관
우경란 의원(4인)

1. 제안이유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구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 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다. 보호기간의 연장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제6조)
- 라.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안 제7조 ~ 제8조)
- 마. 자립지원센터 등 및 협의회(안 제9조 ~ 제10조)
- 바.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제12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4. 6. 3.~ 6. 8.)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3.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한다.

가. 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지원대상아동(이하 “자립준비청년 등”이라 한다)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기간의 연장)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의3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
4.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원 마련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2.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자립지원센터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립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협의회)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